

# 제3장 202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결과

## 제1절 환산지수 산출모형 및 자료

### □ 산출모형 및 자료의 범위

- 2025년도 환산지수는 SGR 모형, 대안모형, 지수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음
  - 본 연구에서 활용한 SGR 모형은 2004년도 환산지수 산출연구에서 미국 메디케어 SGR 모형을 도입한 뒤 우리나라 보건의료환경에 맞추어 수정을 거듭하여 최근 수가 협상에 사용하고 있는 모형과 동일함
  - 대안모형은 기존 SGR 모형의 한계 및 개선지점을 반영하여 강희정 외(2023)가 2024년도 환산지수 산출연구에서 제안한 SGR 개선모형과 거시지표모형(GDP 증가율 모형, MEI 인상률 모형, GDP-MEI 연계모형)을 사용함
  - 지수모형은 2005년도 환산지수 연구(김진현 외, 2004)에서 개발되어 2012년도 연구 까지 사용되었던 모형을 사용함
- 모든 모형에서 진료비 포함범위는 건강보험진료비를 기본으로 하며 비급여 진료비와 비보험(산재, 자보, 일반) 진료비는 포함하지 않음

[표 3-1] 2025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범위

분석 방법	진료비		
	건강보험	비급여	비보험(산재, 자보, 일반)
SGR 모형	○	×	×
대안모형	○	×	×
지수모형	○	×	×

주: SGR 개선모형은 강희정 외(2023)에서 제안한 SGR 개선모형과 거시지표모형을 의미함

## □ 자료 및 자료원

- 각 분석모형별 자료와 자료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2]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범위

분석모형 및 항목	지표	자료원	반영 기간
<b>SGR 모형</b>			
MEI 인건비 고용형태별 인건비 유형별 인건비 <sup>1)</sup>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2020~2023 2020~2023
관리비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2022~2023
재료비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	2022~2023
가중치 비용가중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차 상대가치 회계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차 상대가치 회계조사	2017
SGR 환산지수 변화율 대상자수 변화율 <sup>2)</sup> 1인당 실질GDP 변화율 <sup>3)</sup>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			
목표진료비 실제진료비(지급기준)	환산지수 계약 결과 건강보험 주요 통계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주민등록 연방인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계약 결과 건강보험 주요 통계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주민등록 연방인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2024 2014~2024 2014~2024 2014~2024
<b>지수모형</b>			
수익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2023
비용 인건비 고용형태별 인건비 유형별 인건비 <sup>1)</sup> 관리비 소비자 물가지수 재료비 생산자 물가지수			
비용 인건비 고용형태별 인건비 유형별 인건비 <sup>1)</sup>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2020~2023 2020~2023
관리비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2022~2023
재료비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	2022~2023

주 1) 서비스업조사는 최신 자료가 2022년이므로, 2019~2022년 3년 평균 변화율로 2023년 값을 추정하여 사용

2) 2024년 대상자수는 공표 전이므로 최근 3년(2021~2023년) 증감률을 반영한 추정값을 적용

3) 2024년 실질GDP 및 연방인구 값은 공표 전이므로 최근 3년(2021~2023년)의 증감률을 반영한 추정값을 적용

# 제2절 202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결과

## 1. SGR 모형 및 대안모형

### 가. 이론적 근거 및 기본구조

#### □ 이론적 근거

-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공급자의 두 가지 재정조직이 공존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방식의 보험료로 주로 재정을 조달함
  - 따라서 지속 가능 성장을(sustainable growth rate, SGR)은 사회보험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예산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다른 재정조직인 민간의료공급자는 수익성 조건을 가지는, 즉 투자비용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는 조직이므로 재정적 팽창을 추구하며 이러한 재정적 팽창은 건강보험조직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식됨
  - 특히 의료시장의 경우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도 수반할 수 있으며 지속될 경우 보험료나 국고보조금 인상을 필요로 하므로 규제정책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정책(income policy) 혹은 소득가격정책(income and price policies)이 그중 하나임
    - 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가격 인상 또는 임금 인상 요구를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공급자의 이윤증가폭을 고정시키고 심한 경기불황을 겪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게 함
  - SGR 모형은 규칙에 근거한 소득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 기본구조

- SGR 모형은 기본적으로 당해 연도의 환산지수에 환산지수 조정률을 곱하여 차기 연도의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구조임

$$\text{환산지수}_{t+1} = \text{환산지수}_t \times \text{환산지수조정률}_{t+1}$$

- ① 환산지수 조정률은 의료물가상승률(MEI)과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 차이보정지수(UAF)에 의해 결정됨

$$\text{환산지수조정률}_{t+1} = MEI_{t-1} \times UAF_{t+1}$$

- 의료물가상승률(medicare economic index, MEI)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투입 요인들의 비용 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투입요인들의 구성비중을 가중치로 이용한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나타냄

$$MEI = \sum \text{비용항목별 가중치} \times \text{항목별 가격인상률}$$

-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 차이보정지수(update adjustment factor, UAF)는 목표 진료비보다 실제진료비가 큰 경우, 즉 건강보험공단조직의 목표보다 적자인 경우 이 적자를 적절한 기간에 나누어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의미를 가짐. 이는 실제 진료비가 목표진료비에 수렴하도록 함

$$UAF_{t+1} = \frac{\text{목표진료비}_{t-1} - \text{실제진료비}_{t-1}}{\text{실제진료비}_{t-1}} \times 0.75 + \frac{\text{목표진료비}_{t_0 \sim t-1} - \text{실제진료비}_{t_0 \sim t-1}}{\text{실제진료비}_{t-1} \times (1 + SGR_t)} \times 0.33$$

\*  $t_0$ : 기준연도

- 직전연도의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차이는 0.75의 비율로, 누적연도의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차이는 SGR로 보정한 후 0.33의 비율로 반영하여 UAF를 산출함
- ② 목표진료비는 직전연도 실제진료비에 SGR을 곱하여 산출함
- 기준연도의 목표진료비는 실제진료비와 같은 것으로 하며 이후 특정 연도의 목표

지출액은 전년도의 실제진료비에 SGR을 곱해 구함

- 실제진료비는 총진료비가 아닌,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를 합산한 행위료에 한정됨

$$\text{목표진료비}_t = \text{실제진료비}_{t-1} \times SGR_t$$

$$\text{목표진료비}_{t_0} = \text{실제진료비}_{t_0}$$

- ③ SGR은 수가 변화율, 대상자수 변화율, 1인당 실질 GDP 변화율, 법과 제도의 의한 변화율로 이루어짐

$$SGR = (1 + \text{환산지수 변화율}) \times (1 + \text{대상자수변화율}) \\ \times (1 + 1\text{인당 실질 } GDP \text{ 변화율}) \\ \times (1 + \text{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

- 환산지수 변화율: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확정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적용함
- 대상자수 변화율: 전년 대비 건강보험 대상자수의 변화율을 적용
- 1인당 실질GDP 변화율: 전년 대비 1인당 실질GDP 변화율을 적용
-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
  - 각 연도에 시행된 급여확대 정책의 효과를 나타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행위료 변화를 반영하는 요소로, 급여화 등이 실시된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의 진료비를 반영하며 아래의 원칙을 적용함
  - (원칙 1) 동일한 행위의 비급여에서 급여행위로의 전환은 인정
  - (원칙 2) 급여 행위의 기타 변화(상대가치점수 인상, 급여기준 확대 등)는 불인정
  - (원칙 3)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에 따라 공급자 손실(비급여 수입 감소) 보전을 위한 수가 신설 및 인상 항목은 인정

## 나. 지표 및 자료

### 1) 의료물가지수(MEI)

$$\begin{aligned}\text{의료물가지수}_t &= (\text{인건비증가율}_t \times \text{비용가중치}) \\ &+ (\text{관리비증가율}_t \times \text{비용가중치}) \\ &+ (\text{재료비증가율}_t \times \text{비용가중치})\end{aligned}$$

#### □ 인건비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자료 사용

- 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보건업 평균 인건비 중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을 인건비로 간주하여 확정치 3년 평균
- 보건업 평균 인건비 중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을 인건비로 간주하여 확정치 3년 평균

- ② 서비스업조사

- 중분류 중 보건업 인건비 3년 평균 추정치

#### □ 관리비

-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 사용

- 총 지수
-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균원물가지수

- 농산물 및 석유류는 의료기관 관리비와 연관성이 적고 외부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아 변동성이 크므로 이를 제외한 것이 정합성이 더 높으며 안정적임

#### □ 재료비

-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

- 총 지수
-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 이외 지수

### 비용기증치

- 수익 증가에 대응하는 비용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비용 항목별 구성비율을 파악해 증가율을 고려해야 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3차 상대가치 비용 가중치(2019)를 반영하여 이를 산출함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으로 구분하여 반영하며 아래 표와 같음

[표 3-3] 의료기관 종별 비용 구성 비율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계	(단위: %)
상급종합병원	51.16	39.93	8.91	100.0	
종합병원	56.04	37.41	6.55	100.0	
병원	34.86	58.75	6.39	100.0	
요양병원	34.86	58.75	6.39	100.0	
의원	48.78	42.11	9.11	100.0	
치과병원	67.08	23.71	9.21	100.0	
치과의원	46.94	44.72	8.34	100.0	
한방병원	27.08	54.50	18.42	100.0	
한의원	49.91	38.89	11.20	100.0	
약국	52.26	46.19	1.55	100.0	

자료: 신영석 외. (2019).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SGR

### 환산지수 변화율

-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확정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적용함

#### **□ 대상자수 변화율**

- 전년 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수의 변화율을 적용

#### **□ 1인당 실질GDP 변화율**

- 전년 대비 1인당 실질GDP 변화율을 적용

#### **□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

-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행위료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요소
  - 급여화 등이 실시된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의 진료비를 반영함
  -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원칙 1) 동일한 행위의 비급여에서의 급여 행위로의 전환은 인정
    - (원칙 2) 급여 행위의 기타 변화(상대가치점수 인상, 급여기준 확대 등)는 불인정
    - (원칙 3)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에 따라 공급자 손실(비급여 수익 감소) 보전을 위한 수가 신설 및 인상 항목은 인정

### **3) 목표진료비**

#### **□ 실제진료비와 목표진료비**

- 목표진료비는 전년도 실제진료비에 SGR을 곱하여 산출함
- 실제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위료 4대 분류 구성비를 적용한 행위료(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의 합에서 식대 차감)를 사용함

## 다. 강희정 외(2023)의 대안모형<sup>12)</sup>

### 1) 필요성

#### 기존 SGR 모형의 한계 및 개선지점

- SGR 모형에서 사용하는 거시지표의 경우 국가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식적인 산출 및 발표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의성에 한계가 있으며 연구자가 선택하는 지표값에 따라 환산지수 산출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여 산출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적합도에 의문이 제기됨
- 따라서 강희정 외(2023)에서는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기존 SGR 모형의 쟁점에 대해 고찰하고 대안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 개선지점은 ① 지속가능한 성장률 산출방식, ② 진료비 누적 단위 축소 및 진료비 보정계수 가중비율 차등화, ③ 인건비 자료원의 최신성 확보임

### 2) SGR 개선모형

####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산출

- ① 인구 고령화 반영
  - 의료비 지출규모가 큰 고령인구 비율을 가중하여 대상자수 변화율 반영
  - 5세 연령구간별 평균 진료비 지출비중에 따른 조정인구수 산출
- ② 소득탄력성 반영
  - 고소득 국가는 의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OECD 통계 결과를 인용하여 1인당 실질GDP 변화율에 소득탄력성 가중치 0.8을 반영함

#### (2) 진료비 누적 연한 축소 및 조정계수 보완

- ① 최근 3년 진료비 자료 활용
  - 진료비 관리 및 통제 기전을 반영하고자 진료비 누적 연한을 3년으로 축소함

12) 강희정 외 (2023).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존 10년 이상 누적된 진료비 증감 추이를 최근 3년으로 축소하여 목표진료비 달성을 수준을 반영함으로써 단기적 차원에서도 진료비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② 당해연도 0.5 가중, 전년도 0.3 가중, 전전년도 0.2 가중
  - 최근 실제진료비에 가중을 두어 수가를 조정하기 위함임

### **(3)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변동률 도출**

- ① 기존모형의 ‘환산지수 조정률’을 ‘수가변동률’로 재정의
  - 현행 환산지수 조정률은 행위진료비 규모를 반영하므로 상대가치 변화율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수가결정요인 중 상대가치와 중복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상대가치 변화율을 제하여야 실제 환산지수 조정률의 산출되는 것으로 재정의함
  - 대상 행위와 준거기간을 설정한 뒤 상대가치 변화율을 산출함
- ② ‘수가변동률-유형별 상대가치 변화율’을 ‘환산지수 조정률’로 재정의
  - 수가변동률(MEI\*UAF)에서 상대가치 변화율을 차감하여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함

## **3) 거시지표 모형**

### **(1) GDP 증가율**

- 한국은행이 매년 예측하는 GDP 증가율과 전년 대비 상대가치 인상률의 차이만큼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

### **(2) 의료물가지수 인상률**

- 인건비, 재료비, 약제비를 가중평균한 의료물가 인상률과 전년 대비 상대가치 인상률의 차이만큼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

### **(3) 거시지표 연계모형**

- GDP 증가율이 의료물가지수 인상률보다 높으면 GDP 증가율을 반영하고, 반대의 경우 ‘GDP 증가율+(1/3(의료물가지수인상률-GDP 증가율))’을 반영하여 상대가치 인상률과의 차이만큼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

## 라. 환산지수 산출 결과

### 1) 의료물가지수(MEI)

#### MEI 구성요소에 따른 모형

-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조합에 따라 12개 모형을 구성하여 모형별 환산지수를 산출 하였으며, 본 보고서에는 모형4(1안)와 모형8(2안)에 대한 결과를 제시함

[표 3-4] MEI 구성요소에 따른 모형

모형	1	2	3	4 (1안)	5	6	7	8 (2안)	9	10	11	12	(단위: %)
인건비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재료비	①	①	②	②	①	①	②	②	①	①	②	②	
관리비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 인건비 증가율

- (인건비 1)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보건업 평균 인건비 중 월급 여액 확정치 3년 평균
  - 특별급여까지 포함한 월임금총액도 발표되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원금 등으로 인한 특별급여의 변동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합인 월급여액 자료를 1안으로 사용함
- (인건비 2)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의 인건비 자료의 3년 평균 추정치를 사용함
- (인건비 3)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보건업 평균 인건비 월임금총액(정액급여와 초과급여에 전년도 연간특별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값을 합산) 확정치 3년 평균

[표 3-5] 지표별 인건비 및 3년 연평균 증가율

(단위: 천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b>근로실태조사</b>									
월급여액	2,911	2,972	3,201	3,326	3,469	3,524	3,651	3,809	3,984
(3년 평균증가율)	2.67	2.73	4.60	4.54	5.29	3.26	3.16	3.17	4.17
월임금총액	3,239	3,290	3,508	3,659	3,815	3,833	3,871	4,052	4,289
(3년 평균증가율)	2.38	2.26	4.04	4.15	5.06	3.00	1.90	2.03	3.82
<b>서비스업조사 인건비</b>									
보건업	3,215	3,240	3,366	3,543	3,664	3,926	4,148	4,234	4,439*
(3년 평균증가율)	4.65	4.43	4.45	3.29	4.19	5.26	5.39	4.92	4.18*
종합병원	4,661	4,617	5,367	5,106	5,011	5,414	6,047	6,436	6,996*
병원	3,022	3,216	3,539	3,802	4,209	4,174	4,267	4,406	4,474*
요양병원	—	—	2,709	2,886	2,971	3,222	3,243	3,456	3,635*
의원	2,404	2,437	2,249	2,674	2,880	3,070	3,265	2,865	2,860*
치과병원	3,753	3,587	3,840	3,974	4,084	3,779	4,339	4,403	4,515*
치과의원	2,206	2,316	1,951	2,424	2,715	2,724	2,823	2,492	2,422*
한방병원	2,680	2,609	3,021	3,027	3,057	3,258	3,328	3,322	3,416*
한의원	1,658	1,726	1,538	1,820	1,853	2,044	2,027	1,786	1,76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주: 서비스업조사의 2023년 값은 3년(2019–2022) 평균증가율을 사용한 추정치임

## □ 관리비

- (관리비 1)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의 증가율
- (관리비 2) 소비자물가지수 중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균원물가지수의 증가율

[표 3-6]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증감률(2020년=1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지수	94.86	95.78	97.65	99.09	99.47	100.00	102.50	107.72	111.59
증가율(%)	0.7	1.0	1.9	1.5	0.4	0.5	2.5	5.1	3.6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94.39	95.90	97.32	98.45	99.33	100.00	101.84	106.03	110.27
증가율(%)	2.2	1.6	1.5	1.2	0.9	0.7	1.8	4.1	4.0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 재료비

- (재료비 1)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의 증가율
- (재료비 2) 생산자물가지수 중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지수의 증가율

[표 3-7] 연도별 생산자물가지수 및 증감률(2020년=1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지수	97.06	95.30	98.58	100.43	100.46	100.00	106.38	115.29	117.11
증가율(%)	-4.0	-1.8	3.4	1.9	0.0	-0.5	6.4	8.4	1.6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 제외	96.84	95.50	98.43	100.02	100.12	100.00	106.03	112.75	113.77
증가율(%)	-3.0	-1.4	3.1	1.6	0.1	-0.1	6.0	6.3	0.9

자료: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

## □ MEI

- 이상의 구성요소별 증가율에 비용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된 MEI 값은 다음과 같음

[표 3-8] 모형별 MEI

모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급종합	1.0371	1.0365	1.0387	1.0381	1.0372	1.0366	1.0388	1.0382	1.0353	1.0347	1.0369	1.0363
종합병원	1.0379	1.0374	1.0394	1.0389	1.0379	1.0375	1.0394	1.0390	1.0359	1.0354	1.0374	1.0369
병원	1.0367	1.0362	1.0391	1.0386	1.0367	1.0363	1.0391	1.0387	1.0354	1.0350	1.0378	1.0374
요양병원	1.0367	1.0362	1.0391	1.0386	1.0367	1.0363	1.0391	1.0387	1.0354	1.0350	1.0378	1.0374
의원	1.0370	1.0363	1.0386	1.0380	1.0370	1.0364	1.0387	1.0381	1.0352	1.0346	1.0369	1.0363
치과병원	1.0380	1.0374	1.0389	1.0383	1.0380	1.0374	1.0390	1.0384	1.0356	1.0350	1.0365	1.0359
치과의원	1.0371	1.0365	1.0389	1.0383	1.0371	1.0365	1.0389	1.0384	1.0354	1.0348	1.0372	1.0366
한방병원	1.0338	1.0326	1.0360	1.0348	1.0338	1.0326	1.0360	1.0348	1.0328	1.0316	1.0350	1.0338
한의원	1.0366	1.0358	1.0382	1.0374	1.0366	1.0359	1.0382	1.0374	1.0348	1.0340	1.0364	1.0356
약국	1.0387	1.0387	1.0405	1.0404	1.0387	1.0386	1.0406	1.0405	1.0368	1.0367	1.0387	1.0386

## 2) SGR

### □ 환산지수 변화율

-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유형별 환산지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음

[표 3-9] 연도별 환산지수 변화율(2015~202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병원	1.0174	1.0143	1.0183	1.0166	1.0190	1.0174	1.0144	1.0142	1.0166	1.0188
의원	1.0305	1.0296	1.0313	1.0304	1.0246	1.0288	1.0210	1.0297	1.0211	1.0163
치과	1.0224	1.0194	1.0241	1.0272	1.0205	1.0307	1.0149	1.0225	1.0254	1.0323
한방	1.0215	1.0224	1.0296	1.0288	1.0304	1.0295	1.0286	1.0312	1.0302	1.0356
약국	1.0316	1.0306	1.0349	1.0287	1.0316	1.0353	1.0330	1.0363	1.0361	1.017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DW

### □ 대상자수 변화율

-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변화율은 다음과 같음

[표 3-10] 연도별 대상자수 변화

(단위: 천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강보험 적용인구 <sup>1)</sup>	50,490	50,763	50,941	51,072	51,391	51,345	51,412	51,410	51,453	51,489 <sup>2)</sup>
변화율	1.0035	1.0054	1.0035	1.0026	1.0063	0.9991	1.0013	1.0000	1.0008	1.000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주 1) 건강보험적용인구는 연도별 기준

2) 2024년 적용인구수는 최근 3년(2020~2023년)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정함

### □ 1인당 실질GDP 변화율

-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여 전년 대비 변화율을 적용함

– 2024년 자료가 공표 전이므로 2024년의 변화율은 최근 3년간(2020~2023년) 변화율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표 3-11] 연도별 1인당 실질GDP 변화

(단위: 조, 천명, 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GDP	1,658	1,707	1,761	1,812	1,853	1,840	1,919	1,969	1,996	-
연방인구	50,952	51,113	51,231	51,301	51,337	51,349	51,333	51,259	51,146	-
1인당 실질GDP	3,254	3,339	3,437	3,532	3,609	3,582	3,738	3,841	3,902	-
변화율	1.0243	1.0262	1.0292	1.0277	1.0217	0.9927	1.0434	1.0276	1.0158	1.0289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주 1) 실질GDP는 2015년 불변가격 기준임

2) 2022년 이후 실질GDP는 잠정치임

3) 연방인구는 행정자치부의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를 연방 개념으로 통계청에서 재작성한 것

4) 2024년 1인당 실질GDP 변화율은 최근 3년간(2022~2023년)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정함

## □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

### ○ 각종 보장성 강화 등 행위료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함

- 2023년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은 2022~202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에 따른 행위료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반영 원칙에 따라 항목을 선정함
- 2023년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0.12%)이 가장 높고 병원(0.09%), 의원(0.04%) 순으로, 주로 의과에서 발생하였음
- 2024년에는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함

[표 3-12] 연도별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상급종합병원	1.0859	1.0826	1.0680	1.0648	1.0490	1.0121	1.0066	1.0120	1.0012	1.0000
종합병원	1.0527	1.0617	1.0403	1.0363	1.0517	1.0106	1.0070	1.0114	1.0010	1.0000
병원	1.0249	1.0269	1.0465	1.0226	1.0367	1.0272	1.0157	1.0101	1.0009	1.0000
요양병원	1.0007	1.0052	1.0025	1.0005	1.0014	1.0006	1.0004	1.0003	1.0000	1.0000
의원	1.0039	1.0059	1.0172	1.0172	1.0152	1.0184	1.0153	1.0090	1.0004	1.0000
치과병원	1.1152	1.1580	1.0860	1.0008	1.0351	1.0000	1.0158	1.0001	1.0001	1.0000
치과의원	1.1152	1.1580	1.0860	1.0008	1.0351	1.0000	1.0158	1.0001	1.0001	1.0000
한방병원	1.0030	1.0010	1.0004	1.0001	1.0357	1.0199	1.0021	1.0004	1.0000	1.0000
한의원	1.0030	1.0010	1.0004	1.0001	1.0357	1.0199	1.0021	1.0004	1.0000	1.0000
약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DW

□ **SGR**

○ 이상의 구성요소 산출을 통하여 도출된 요양기관 유형별 SGR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13] 연도별 유형별 SGR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상급종합병원	1.1355	1.1330	1.1233	1.1153	1.0991	1.0212	1.0668	1.0547	1.0348	1.0490
종합병원	1.1009	1.1111	1.0941	1.0855	1.1019	1.0197	1.0673	1.0540	1.0345	1.0490
병원	1.0718	1.0747	1.1006	1.0710	1.0861	1.0365	1.0764	1.0527	1.0345	1.0490
요양병원	1.0464	1.0520	1.0543	1.0479	1.0492	1.0096	1.0602	1.0425	1.0335	1.0490
의원	1.0632	1.0686	1.0835	1.0799	1.0694	1.0391	1.0830	1.0676	1.0385	1.0464
치과병원	1.1720	1.2179	1.1486	1.0592	1.0859	1.0222	1.0771	1.0508	1.0425	1.0628
치과의원	1.1720	1.2179	1.1486	1.0592	1.0859	1.0222	1.0771	1.0508	1.0425	1.0628
한방병원	1.0530	1.0559	1.0638	1.0600	1.0971	1.0413	1.0769	1.0600	1.0474	1.0663
한의원	1.0530	1.0559	1.0638	1.0600	1.0971	1.0413	1.0769	1.0600	1.0474	1.0663
약국	1.0603	1.0634	1.0689	1.0599	1.0605	1.0268	1.0792	1.0649	1.0534	1.0475

### 3) 목표진료비 및 UAF

□ **실제진료비**

○ 2023년 실제진료비(행위료)는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한방병원(20.6%)과 상급종합병원(20.5%)이 크게 증가하였고 요양병원(-1.8%)은 감소하였음

[표 3-14] 연도별 실제진료비(행위료)

(단위: 백만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급종합병원	6,235	7,543	7,815	9,891	10,709	10,828	12,083	12,397	14,934
종합병원	6,651	7,614	8,306	9,580	11,381	11,445	12,461	13,515	14,293
병원	4,268	4,486	4,906	5,418	6,110	6,209	6,634	7,426	7,481
요양병원	2,942	3,274	3,561	3,869	4,167	4,634	4,448	4,651	4,567
의원	11,058	11,696	12,735	14,023	15,775	15,847	17,408	21,503	22,927
치과병원	165	200	237	254	302	293	309	312	339
치과의원	2,610	3,146	3,604	3,781	4,471	4,420	4,739	4,922	5,281
한방병원	222	256	292	311	370	437	470	515	621
한의원	2,032	2,084	2,167	2,315	2,566	2,424	2,496	2,529	2,712
약국	3,360	3,617	3,849	4,055	4,298	3,969	4,085	4,868	5,4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 목표진료비

- 연도별 실제진료비(행위료)에 SGR을 곱하여 연도별 목표진료비를 산출함
  - 2023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은 목표진료비가 실제진료비보다 낮고 병원, 요양병원은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낮음

[표 3-15] 연도별 목표진료비(행위료)

	(단위: 십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급종합병원	6,589	7,064	8,473	8,716	10,871	10,936	11,551	12,744	12,828
종합병원	6,920	7,389	8,331	9,016	10,556	11,605	12,216	13,134	13,982
병원	4,600	4,587	4,937	5,254	5,885	6,332	6,684	6,983	7,682
요양병원	3,431	3,095	3,452	3,731	4,060	4,207	4,912	4,637	4,807
의원	11,248	11,816	12,672	13,752	14,996	16,392	17,162	18,584	22,330
치과병원	154	200	229	251	276	309	316	325	325
치과의원	2,593	3,179	3,613	3,817	4,106	4,571	4,761	4,979	5,131
한방병원	228	235	272	310	341	385	471	499	539
한의원	2,130	2,145	2,217	2,297	2,540	2,672	2,610	2,646	2,649
약국	3,445	3,573	3,867	4,080	4,300	4,413	4,283	4,350	5,128

## □ UAF

- 10년간의 누적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병원과 한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전연도와 누적연도의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차이에 각각 0.75, 0.33 비율을 반영하여 UAF 2025를 산출한 결과 병원, 요양병원, 한의원에서 1보다 큰 값이 도출되었음

[표 3-16] 2014년–2022년 목표 대비 실제진료비 및 UAF 2025

(단위: 백만원)

	2014–2023 실제진료비(A)	2014–2023 목표진료비(B)	목표진료비–실제진료비 (B-A)	UAF 2025
상급종합병원	98,237,180	95,741,223	-2,495,957	0.8673
종합병원	101,532,193	99,371,345	-2,160,848	0.9593
병원	57,229,823	57,362,493	132,670	1.0230
요양병원	39,393,024	39,268,675	-124,349	1.0349
의원	153,550,795	149,734,560	-3,816,235	0.9536
치과병원	2,541,186	2,518,060	-23,125	0.9578
치과의원	39,186,081	38,905,028	-281,053	0.9702
한방병원	3,711,327	3,494,786	-216,541	0.8459
한의원	23,347,260	23,926,337	579,078	1.0166
약국	40,750,832	40,746,322	-4,510	0.9620

## 4) 환산지수 산출 결과

### □ 환산지수 조정률

- 의료물가상승률(MEI)과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 차이보정지수(UAF)를 곱하여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함
  - 인건비 자료원을 달리하여 두 가지 안을 적용함
    - (1안) 인건비에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 사용, 재료비는 근원 물가지수, 관리비는 생산자물가지수 중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 제외 지수
    - (2안) 인건비에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자료 사용, 재료비는 근원물가지수, 관리비는 생산자물가지수 중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 제외 지수
- 2025년 전체 요양기관 환산지수 조정률은 -1.07%로 나타났으며, 요양기관 종별 행위료 비중을 반영하여 중분류 조정률을 산출한 결과 유형별로 한방, 치과, 약국, 의원, 병원 순이었음
  - 한방, 치과, 약국은 양의 값이, 병원과 의원은 음의 값이 도출됨

[표 3-17] 2025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

(단위: %)

	환산지수 조정률		순위
	1안	2안	
상급종합병원	-9.96	-9.95	
종합병원	-0.33	-0.33	
병원	6.25	6.25	
요양병원	7.49	7.49	
<b>병원</b>	-1.76	-1.75	5
<b>의원</b>	-1.01	-1.00	4
치과병원	-0.55	-0.54	
치과의원	0.74	0.75	
<b>치과</b>	0.66	0.67	2
한방병원	-12.47	-12.47	
한의원	5.46	5.46	
<b>한방</b>	2.12	2.12	1
<b>약국</b>	0.09	0.09	3
<b>전체</b>	-1.07	-1.07	

주 1) 중분류 조정률 산출 시 각 요양기관종별 행위료 규모비율로 가중평균함

2) 1안: 인건비 1(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확정치 3년 평균 증감률), 관리비 2(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재료비 2(생산자물가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 제외)

2안: 인건비 2(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추정치 인건비 3년 평균 증감률)), 관리비 및 관리비 2(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재료비 2(생산자물가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 제외)

## 5) 대안모형 산출결과

- 본 연구에서는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강희정 외, 2023)에서 제안한 두 가지 대안 모형(SGR 개선모형, 거시지표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지수도 제시함
  - 본 장에서는 기존 SGR 모형과 달라진 요소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시하였음

### (1) SGR 개선모형

#### 의료물가지수(MEI)

- 의료물가상승률은 기존 SGR 모형과 동일함

#### SGR 산출요소

- 실제 환산지수 변화율

- 실제 환산지수 변화율은 기존 SGR 모형과 동일함

- 고령화 영향을 반영한 대상자수 변화율

- 5세 연령 구간별로 차지하는 진료비 규모를 전체 인구의 평균 진료비와 비교하여 연령대별 비율(A)을 산출하고, 이를 차년도 구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수에 곱하여 전년도 의료비 지출을 반영한 조정인구수를 산출함(표 3-18)

- 이는 기존 SGR 모형이 진료비 규모 증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함임

- 고령화 영향을 반영한 조정인구수 증가율은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증가율보다 크며, 조정 전보다 일정한 변화율을 보임(표 3-19)

[표 3-18] 연도별 진료비 지출 비중 대비 인구(2023년 기준)

연령 구간	2022년				2023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수(명)	총진료비 (천원)	평균진료비 (천원)	평균진료비 대비 비율(A)	건강보험 적용 인구수(B)	조정인구수 (A*B)
0~4세	1,438,937	2,458,456,959	1,709	0.86	1,348,181	1,156,109
5~9세	2,097,908	1,916,116,917	913	0.46	1,997,362	915,635
10~14세	2,320,799	1,709,663,239	737	0.37	2,300,062	850,438
15~19세	2,298,398	1,613,206,070	702	0.35	2,287,296	805,781
20~24세	3,004,742	2,118,229,027	705	0.35	2,893,742	1,023,895
25~29세	3,620,892	3,009,612,595	831	0.42	3,574,698	1,491,297
30~34세	3,483,373	3,699,294,100	1,062	0.53	3,581,621	1,909,099
35~39세	3,439,261	3,978,902,312	1,157	0.58	3,335,789	1,936,986
40~44세	4,101,737	4,978,507,348	1,214	0.61	4,135,877	2,519,584
45~49세	4,075,342	5,647,662,665	1,386	0.70	3,909,253	2,719,120
50~54세	4,555,057	7,570,946,287	1,662	0.83	4,520,410	3,771,065
55~59세	4,064,051	8,394,187,539	2,065	1.04	4,183,158	4,336,643
60~64세	4,158,119	11,214,279,900	2,697	1.35	4,170,065	5,644,782
65~69세	3,088,624	11,564,893,688	3,744	1.88	3,309,991	6,220,615
70세 이상	5,662,738	32,553,770,136	5,749	2.89	5,905,550	17,039,822
전체	51,409,978	102,427,728,782	1,992	1.00	51,453,055	52,340,87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 각 연도

주: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

[표 3-19] 대상자수 변화율 비교

(단위: 명, %)

		2020	2021	2022	2023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상자수	51,344,938	51,412,137	51,409,978	51,453,055
	전년 대비 변화율	0.9991	1.0013	1.0000	1.0008
고령화 반영	대상자수	52,391,300	52,358,706	52,421,741	52,340,870
건강보험 적용인구	전년 대비 변화율	1.0195	1.0197	1.0196	1.018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 각 연도

### ○ 소득탄력성을 반영한 1인당 실질GDP 변화율

- OECD 연구 결과 고소득 국가의 의료비 소득탄력성 0.8을 곱하여 소득탄력성 가중치를 반영한 실질GDP 증가율을 산출함

[표 3-20] 소득탄력성 가중치를 반영한 연도별 1인당 실질GDP 변화율

(단위: 조, 천명, 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GDP	1,658	1,707	1,761	1,812	1,853	1,840	1,919	1,969	1,996
연인구	50,952	51,113	51,231	51,301	51,337	51,349	51,333	51,259	51,146
1인당 실질GDP	3,254	3,339	3,437	3,532	3,609	3,582	3,738	3,841	3,902
변화율	1.0243	1.0262	1.0292	1.0277	1.0217	0.9927	1.0434	1.0276	1.0158
개선모형 변화율	1.0194	1.0210	1.0234	1.0221	1.0174	0.9941	1.0347	1.0221	1.0126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 법과 제도 변화에 의한 변화율

- 법과 제도 변화에 의한 변화율은 기존 SGR 모형과 동일함

## □ SGR

- 이상의 구성요소 산출을 통하여 도출된 SGR 개선모형의 요양기관 유형별 SGR은 아래와 같음
  - 전반적으로 기존 SGR 모형에서보다 높게 산출되었으며, 이는 대상자수에 고령화 영향을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개선 SGR 모형에서는 목표진료비 산출 시에만 SGR 값이 사용되므로 2023년까지의 값만 보고함

[표 3-21] SGR 개선모형의 SGR 산출 결과

	기준모형			개선모형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상급종합병원	1.0668	1.0547	1.0348	1.0774	1.0697	1.0494
종합병원	1.0673	1.0540	1.0345	1.0779	1.0690	1.0491
병원	1.0764	1.0527	1.0345	1.0871	1.0677	1.0491
요양병원	1.0602	1.0425	1.0335	1.0707	1.0573	1.0481
의원	1.0830	1.0676	1.0385	1.0938	1.0827	1.0531
치과병원	1.0771	1.0508	1.0425	1.0878	1.0657	1.0572
치과의원	1.0771	1.0508	1.0425	1.0878	1.0657	1.0572
한방병원	1.0769	1.0600	1.0474	1.0876	1.0751	1.0622
한의원	1.0769	1.0600	1.0474	1.0876	1.0751	1.0622
약국	1.0792	1.0649	1.0534	1.0899	1.0800	1.0682

#### □ 목표진료비

- 목표진료비 산출 방식은 기준 SGR 모형과 동일하지만 SGR 값이 변화하였으므로 기준 모형과 산출값은 상이함

[표 3-22] SGR 개선모형의 목표진료비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2-23	△21-23
상급종합병원	11,666,221	12,925,161	13,008,816	0.65%	5.60%
종합병원	12,336,982	13,320,876	14,178,840	6.44%	7.21%
병원	6,750,057	7,082,445	7,790,396	10.00%	7.43%
요양병원	4,961,328	4,703,333	4,874,426	3.64%	-0.88%
의원	17,333,005	18,847,724	22,644,930	20.15%	14.30%
치과병원	318,656	329,390	329,487	0.03%	1.69%
치과의원	4,808,310	5,050,110	5,203,768	3.04%	4.03%
한방병원	475,596	505,742	546,856	8.13%	7.23%
한의원	2,636,056	2,683,551	2,686,036	0.09%	0.94%
약국	4,325,328	4,411,714	5,200,082	17.87%	9.65%

□ **UAF**

- UAF 산출에 포함하는 진료비 범위를 최근 10년에서 최근 3년으로 축소하였으며 누적진료비가 아닌 각 연도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의 차이에 가중 비율을 곱함
  - 최근 실제진료비에 가중을 두어 수가를 조정하기 위해 아래 식처럼 당해연도에 0.5, 전년도에 0.3, 전전년도에 0.2의 가중비율을 반영함

$$\begin{aligned} & \frac{\text{목표진료비}_t - \text{실제진료비}_t}{\text{실제진료비}_t} \times 0.5 + \frac{\text{목표진료비}_{t-1} - \text{실제진료비}_{t-1}}{\text{실제진료비}_{t-1}} \times 0.3 \\ & + \frac{\text{목표진료비}_{t-2} - \text{실제진료비}_{t-2}}{\text{실제진료비}_{t-2}} \times 0.2 \end{aligned}$$

[표 3-23] 최근 3개년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차이 및 SGR 개선모형의 UAF 2025

(단위: 백만원)

	목표진료비-실제진료비			UAF 2025
	2023	2022	2021	
상급종합병원	-1,924,748	528,516	-417,178	0.9414
종합병원	-114,636	-194,532	-123,922	0.9897
병원	309,149	-343,550	116,457	1.0103
요양병원	307,009	52,593	513,086	1.0601
의원	-281,761	-2,655,463	-74,708	0.9559
치과병원	-9,559	17,734	9,578	1.0092
치과의원	-77,354	127,971	69,604	1.0034
한방병원	-73,846	-9,110	5,172	0.9374
한의원	-26,119	154,709	139,905	1.0247
약국	-200,351	-456,376	240,383	0.9651

## □ 수가변동률

- 기존 SGR 모형의 환산지수 조정률(CF)을 ‘수가변동률’로 재정의함

## □ 환산지수 조정률

- 의료물가상승률(MEI)과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 차이보정지수(UAF)를 곱한 수가변동률에서 유형별 상대가치 변화율을 차감하여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함
- 상대가치 변화율의 산출 대상 행위 및 준거기간
  - 환산지수 변화율, 법과 제도 변화율 등과 같은 기간인 2022년 대비 2023년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DW 5단 코드 행위 중 2022–2023년에 신설 및 삭제 행위 코드, 빈도가 없는 코드를 제외하고 실제 청구가 있었던 행위 코드를 대상으로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 점수 및 빈도 자료와 비교 검증한 후 최종 대상 항목을 확정함

[표 3-24] 상대가치 변화율 산출대상 항목 선정(2022–2023년)

전체 항목	제외 항목 <sup>주)</sup>			분석대상 항목
	신설코드	삭제코드	빈도 없음	
상급종합병원			1,701	5,396
종합병원			1,664	5,433
병원			3,003	4,094
요양병원			4,513	2,584
병원급 이상			921	6,176
의원			3,422	3,675
치과병원	7,264	128	6,073	1,024
치과의원			6,690	407
치과			6,030	1,067
한방병원			5,424	1,673
한의원			7,005	92
한방			5,420	1,677
약국			7,059	38
전체			719	6,378

주: 2023년 신설코드, 2022–2023년 삭제 및 빈도 없는 행위는 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전체 6,378개 항목이 상대가치 변화율 산출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종별 빈도에 따라 분석대상 항목수는 상이함
  - 병원급 이상 6,176개, 의원 3,675개, 치과 1,067개, 한방 1,677개, 약국 38개
- 요양기관 종별 분석대상 항목에 대해 가격(P)과 양(Q)을 고려한 상대가치 총점을 산출함
  - 전체 행위료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변화율은 0.0008% 수준이었으며 약국이 0.0223%로 가장 컼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상대가치 총점이 감소함
- 상대가치 총점 차감은 정기 상대가치개편 외 수시 상대가치점수 인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분을 제외하기 위한 목적의 차감요소이므로, 상대가치 변화율이 음(−)의 값이면 0으로 적용함

[표 3-25] 요양기관 종별 상대가치 총점 및 변화율(2022–2023년)

	상대가치 총점		상대가치 변화율
	2022년	2023년	
상급종합병원	123,432,604,929	123,431,020,460	-0.0013%
종합병원	119,026,360,756	119,025,066,865	-0.0011%
병원	67,151,553,631	67,150,374,822	-0.0018%
요양병원	14,857,348,226	14,857,344,598	0.0000%
<b>병원급 이상</b>	<b>324,467,867,541</b>	<b>324,463,806,744</b>	<b>-0.0013%</b>
<b>의원</b>	<b>220,646,182,322</b>	<b>220,644,110,161</b>	<b>-0.0009%</b>
치과병원	2,225,184,232	2,225,184,232	0.0000%
치과의원	34,288,145,359	34,288,145,359	0.0000%
<b>치과</b>	<b>36,513,329,591</b>	<b>36,513,329,591</b>	<b>0.0000%</b>
한방병원	5,257,162,569	5,257,162,051	0.0000%
한의원	25,189,417,463	25,189,417,463	0.0000%
<b>한방</b>	<b>30,446,580,032</b>	<b>30,446,579,514</b>	<b>0.0000%</b>
<b>약국</b>	<b>52,744,261,349</b>	<b>52,756,013,992</b>	<b>0.0223%</b>
<b>전체</b>	<b>664,818,220,835</b>	<b>664,823,840,002</b>	<b>0.0008%</b>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수가변동률에서 상대가치 변화율을 제하여 SGR 개선모형의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함

- 중분류조정률 산출 시에는 요양기관 종별 행위료 비중을 반영함

[표 3-26] SGR 개선모형의 2025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

	수가변동률(A)		상대가치 변화율(B)	환산지수 조정률(A-B)		순위
	1안	2안		1안	2안	
상급종합병원	-2.27%	-2.26%	0.0000%	-2.27%	-2.26%	
종합병원	2.82%	2.83%	0.0000%	2.82%	2.83%	
병원	4.93%	4.93%	0.0000%	4.93%	4.93%	
요양병원	10.10%	10.10%	0.0000%	10.10%	10.11%	
<b>병원급 이상</b>	2.17%	2.17%	0.0000%	2.17%	2.17%	3
<b>의원</b>	-0.77%	-0.77%	0.0000%	-0.77%	-0.77%	5
치과병원	4.78%	4.79%	0.0000%	4.78%	4.79%	
치과의원	4.19%	4.19%	0.0000%	4.19%	4.19%	
<b>치과</b>	4.22%	4.23%	0.0000%	4.22%	4.23%	2
한방병원	-3.00%	-3.00%	0.0000%	-3.00%	-3.00%	
한의원	6.31%	6.31%	0.0000%	6.31%	6.31%	
<b>한방</b>	4.57%	4.58%	0.0000%	4.57%	4.58%	1
<b>약국</b>	0.41%	0.42%	0.0223%	0.39%	0.39%	4
<b>전체</b>	1.44%	1.44%	0.0008%	1.44%	1.44%	

주 1) 상대가치 변화율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적용함

2) 중분류 조정률 산출 시 각 요양기관종별 행위료 규모비율로 가중평균함

3) 1안: 인건비 1(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확정치 3년 평균 증감률), 관리비 2(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재료비 2(생산자물가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 제외)

2안: 인건비 2(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추정치 인건비 3년 평균 증감률)), 관리비 및 관리비 2(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재료비 2(생산자물가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 제외)

## (2) 거시지표모형

### □ GDP 증가율

- 실질GDP 증가율에 유형별 상대가치 변화율을 차감한 값을 환산지수 조정률로 함
  - 2023년 실질GDP 증가율은 1.36%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실질GDP 증가율에서 상대가치 변화율을 차감한 결과 환산지수 조정률은 2.54~2.56 수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유형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음

[표 3-27] 실질GDP 증가율을 반영한 환산지수 조정률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질GDP 증가율	2.91%	2.24%	-0.71%	4.30%	2.61%	1.36%
▼						
구분	실질GDP 증가율(A)	상대가치 변화율(B)	환산지수 조정률(A-B)			
병원급 이상		0.0000%	1.36%			
의원		0.0000%	1.36%			
치과	1.36%	0.0000%	1.36%			
한방		0.0000%	1.36%			
약국		0.0223%	1.33%			
전체	1.36%	0.0008%	1.36%			

자료 1)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주: 상대가치 변화율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적용함

### □ 의료물가지수(MEI) 인상률

- 의료물가지수 인상률에 유형별 상대가치 변화율을 차감한 값을 환산지수 조정률로 함
  - 2023년 요양기관 전체 의료물가지수 인상률은 3.84%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
  - 상대가치 변화율을 차감한 결과 환산지수 조정률이 유형별로 3.69~4.0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거시지표 모형 특성상 SGR 개선모형에 비해 유형별 편차가 크지 않았음

[표 3-28] MEI 인상률을 반영한 환산지수 조정률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MEI 인상률	2.83%	2.95%	1.86%	2.80%	3.83%	3.84%

  

구분	MEI 인상률(A)	상대가치 변화율(B)	환산지수 조정률(A-B)			
병원급 이상	3.86%	0.0000%	3.86%			
의원	3.80%	0.0000%	3.80%			
치과	3.83%	0.0000%	3.83%			
한방	3.69%	0.0000%	3.69%			
약국	4.04%	0.0023%	4.02%			
전체	3.84%	0.0008%	3.84%			

#### □ 거시지표 연계모형

- 실질GDP 증가율과 의료물가지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한 결과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GDP 증가율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환산지수 조정률은 2.19%, 유형별로는 2.13~2.23%로 나타남

[표 3-29] 거시지표 연계를 통한 환산지수 조정률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질GDP 증가율	2.91%	2.24%	-0.71%	4.30%	2.61%	1.36%
MEI 인상률	2.83%	2.95%	1.86%	2.80%	3.83%	3.84%

  

실질GDP 증가율	MEI 인상률	변화율		
		기준(A)	상대가치 변화율(B)	환산지수 조정률(A-B)
병원급 이상	1.36% < 3.86% → 2.19%	3.86%	0.0000%	2.19%
의원	1.36% < 3.80% → 2.17%	3.80%	0.0000%	2.17%
치과	1.36% < 3.83% → 2.18%	3.83%	0.0000%	2.18%
한방	1.36% < 3.69% → 2.13%	3.69%	0.0000%	2.13%
약국	1.36% < 4.04% → 2.25%	4.04%	0.0023%	2.23%
전체	1.36% < 3.84% → 2.19%	3.84%	0.0008%	2.19%

## 2. 지수모형

### 가. 이론적 근거 및 기본구조

#### □ 이론적 근거

- 의료계와가입자 단체는 경영수지 적자 및 흑자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여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기준년도의 경영수지는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닌 수지균형을 이루었다고 가정하고 지난 1년간의 변화만을 분석대상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이 고안되었음(김진현 외, 2006)
  - 현행 환산지수를 인정하고, 기관당 진료수익지수 및 의료물가지수의 변동에 의해 차기년도의 환산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원가기준 환산지수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 기본구조

- 현행 환산지수 하에서 원가가 보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함

$$\text{건강보험급여원가}_{t_0} = \text{건강보험급여수익}_{t_0}$$

\*  $t_0$ : 기준연도

즉,

$$\begin{aligned} C_t &= R_t \\ &= F_t \times \left( \sum_{i=1}^n V_i \times Q_i \right) \times a_k + K + X \end{aligned}$$

\* C: 건강보험급여원가, R: 건강보험급여수익  
F: 환산지수,  $V_i$ : 상대가치점수,  $Q_i$ : 진료량,  $a_k$ : 종별가산율,  
K: 재료비수익, X: 약제비수익

- 전년도의 실제 건강보험수익을  $R_t'$ 이라고 하고, 실제 건강보험원가를  $C_t'$ 이라고

하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됨

$$R_t' = R_t \times (1+s)$$

$$C_t' = C_t \times (1+m)$$

\* s: 건강보험수익 증가율, m: 의료물가지수 인상률

- 수지균형조건에 의해 차기년도 초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환산지수를 설정 해야 함

$$C_t' = R_t' \times \phi \times (1+\delta) + R_t' \times (1-\phi)$$

$$\therefore \phi = \frac{F_t \times \left( \sum_{i=1}^n V_i \times Q_i \right) \times a_k}{R_t}$$

$$\begin{aligned} \therefore \delta &= \frac{C_t' - R_t'}{R_t' \phi} \\ &= \frac{C_t(1+m) - R_t(1+s)}{R_t(1+s)\phi} \\ &= \frac{(1+m) - (1+s)}{(1+s)\phi} \quad (\because C_t = R_t) \\ &= \frac{m-s}{(1+s)\phi} \end{aligned}$$

\* δ: 수가조정률

- 따라서 차기년도 환산지수( $F_{t+1}$ )는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F_{t+1} &= F_t \times (1+\delta) \\ &= F_t \times \left[ 1 + \frac{m-s}{(1+s)\phi} \right] \end{aligned}$$

\*  $t_0$ : 기준연도

## **나. 지표 및 자료**

### **1) 수익**

#### **□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진료비 자료를 사용함
  - 건강보험 총진료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4대분류별 요양급여 비용 구성 비율을 적용한 행위료와 요양기관 종별 기관수를 파악하여 기관당 수익 증가율을 계산함
- 비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민간보험은 제외함

### **2) 비용**

#### **□ MEI**

- SGR 모형에서 사용한 의료물가지수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 인건비
  - (인건비 1)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보건업 평균 인건비 중 월급 여액 확정치 3년 평균
  - (인건비 2)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의 인건비 자료의 3년 평균 추정치
- 관리비
  - 소비자물가지수 중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균원물가지수의 증가율
- 재료비
  - 생산자물가지수 중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지수의 증가율
- 각 항목에 SGR 모형에서와 동일한 비용 구성 비율을 반영하여 MEI를 산출하였으며 (조산원은 이용재 외(2013) 자료 사용) 인건비 1을 적용한 결과를 1안, 인건비 2를 적용한 결과를 2안으로 제시함

## 다. 산출 결과

### 1) 수익

#### □ 2023년 행위료 수익증가

- 2022년과 2023년 건강보험 행위료 수익을 이용하여 기관당 수익증가율을 계산함
  - 2023년 기관당 수익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방병원(17.9%), 보건기관(11.2%) 순임
  - 유형별로는 보건기관(11.2%), 병원(9.2%), 한방(9.1%), 약국(9.1%) 순이고 조산원은 27% 감소함

[표 3-30] 의료기관 종별 기관당 건강보험 행위료 수익률

	건강보험 행위료 <sup>1)</sup> 수익		기관수 <sup>2)</sup>		기관당 수익 증가율 <sup>4)</sup>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상급종합병원	12,539,123	15,109,326	45	45	20.5%
종합병원	13,776,691	14,597,184	328	331	5.0%
병원	7,682,297	7,769,317	1,398	1,403	0.8%
요양병원 <sup>3)</sup>	5,608,062	5,548,468	1,692	1,649	1.5%
병원 계	39,606,172	43,024,296	3,463	3,428	9.2%
의원	21,547,596	22,972,257	34,958	35,717	4.3%
치과병원	311,808	339,210	236	239	7.4%
치과의원	4,922,140	5,281,122	18,851	19,032	6.3%
치과 계	5,233,947	5,620,333	19,087	19,271	6.3%
한방병원	561,418	677,797	546	559	17.9%
한의원	2,531,391	2,715,206	14,549	14,592	6.9%
한방 계	3,092,809	3,393,003	15,095	15,151	9.1%
조산원	186	146	14	15	-27.0%
보건기관	54,407	60,448	3,477	3,473	11.2%
약국	4,868,090	5,400,433	24,302	24,707	9.1%
전체	74,403,207	80,470,915	100,396	101,762	6.7%

주 1) 총진료비 중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의 합이며, 식대 미차감한 수치임

2) 각 연도 4분기 기준

3)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합한 값

4) 중분류 값은 행위료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값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DW

## 2) 비용

### □ 2023년 의료원가 증가율

-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 의료원가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1안과 2안 모두 약국의 의료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한방병원이 가장 낮았음

[표 3-31] 의료기관 종별 의료원가 변화율

	비용항목별 증가율(%) <sup>1)</sup>				비용 구성 비율(%) <sup>2)</sup>			MEI <sup>4)</sup>	
	인건비1	인건비2	관리비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1안	2안
상급종합병원					51.2	39.9	8.9	1.0381	1.0382
종합병원					56.0	37.4	6.5	1.0389	1.0390
병원					34.9	58.7	6.4	1.0386	1.0387
요양병원					34.9	58.7	6.4	1.0386	1.0387
병원 계								1.0386	1.0386
의원					48.8	42.1	9.1	1.0380	1.0381
치과병원					67.1	23.7	9.2	1.0383	1.0384
치과의원					46.9	44.7	8.3	1.0383	1.0384
치과 계	4.17	4.18	4.00	0.90				1.0383	1.0384
한방병원					27.1	54.5	18.4	1.0348	1.0348
한의원					49.9	38.9	11.2	1.0374	1.0374
한방 계								1.0369	1.0369
조산원					58.7	32.5	8.8	1.0383	1.0384
보건기관					48.8	42.1	9.1	1.0380	1.0381
약국					52.3	46.2	1.5	1.0404	1.0405
전체								1.0384	1.0385

주 1) 인건비2는 2023년 인건비를 최근 3년(2019–2022) 평균 증가율을 사용하여 추정

2) 보건기관의 비용 구성 비율은 의원의 값은 적용함

3)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합한 값

4) 중분류와 전체 값은 행위료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값임

자료 1) 인건비1: 고용노동부(20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인건비2: 통계청(2024). 「서비스업조사」

관리비: 통계청(2024). 「소비자물가지수」

재료비: 통계청(2024). 「생산자물가지수」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은 신영석 외 (2019), 조산원은 이용재 외(2013)

### 3) 지수모형에 의한 2025년도 환산지수

#### □ 2025년도 환산지수

○ 행위료 수익과 의료물가를 기준으로 2025년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조산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이 환산지수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하폭은 보건기관이 가장 큼

[표 3-32] 2025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

기관당 행위료 수익 증가율	기관당 의료원가 증가율				환산지수 조정률 1안 2안	순위
	1안	2안	1안	2안		
상급종합병원	20.50	3.81	3.82	-16.68	-16.68	
종합병원	5.00	3.89	3.90	-1.10	-1.10	
병원	0.77	3.86	3.87	3.09	3.09	
요양병원	1.52	3.86	3.87	2.35	2.35	
<b>병원</b>	<b>9.23</b>	<b>3.86</b>	<b>3.86</b>	<b>-5.37</b>	<b>-5.37</b>	<b>5</b>
<b>의원</b>	<b>4.35</b>	<b>3.80</b>	<b>3.81</b>	<b>-0.54</b>	<b>-0.54</b>	<b>2</b>
치과병원	7.42	3.83	3.84	-3.59	-3.58	
치과의원	6.27	3.83	3.84	-2.44	-2.44	
<b>치과</b>	<b>6.34</b>	<b>3.83</b>	<b>3.84</b>	<b>-2.51</b>	<b>-2.51</b>	<b>3</b>
한방병원	17.92	3.48	3.48	-14.45	-14.44	
한의원	6.95	3.74	3.74	-3.21	-3.20	
<b>한방</b>	<b>9.14</b>	<b>3.69</b>	<b>3.69</b>	<b>-5.45</b>	<b>-5.45</b>	<b>6</b>
<b>조산원</b>	<b>-27.00</b>	<b>3.83</b>	<b>3.84</b>	<b>30.83</b>	<b>30.84</b>	<b>1</b>
<b>보건기관</b>	<b>11.23</b>	<b>3.80</b>	<b>3.81</b>	<b>-7.43</b>	<b>-7.42</b>	<b>7</b>
<b>약국</b>	<b>9.12</b>	<b>4.04</b>	<b>4.05</b>	<b>-5.07</b>	<b>-5.07</b>	<b>4</b>
<b>전체</b>	<b>6.70</b>	<b>3.84</b>	<b>3.85</b>	<b>-2.86</b>	<b>-2.85</b>	

주 1) 중분류 조정률 산출 시 각 요양기관종별 행위료 규모비율로 가중평균함

2) 1안: 인건비 1(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확정치 3년 평균 증감률), 관리비 2(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재료비 2(생산자물가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 제외)

2안: 인건비 2(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추정치 인건비 3년 평균 증감률)), 관리비 및 관리비 2(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재료비 2(생산자물가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 제외)



# 제4장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과 파급효과 추정모형

## 제1절 기존 SGR 모형의 이론적 타당성 검토

### 1. 거시지표의 적절성

#### □ 개선 필요성

- 현재 환산지수 산출에 사용하는 SGR 모형에서는 거시지표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장률(SGR)을 산출한 뒤 이를 활용하여 환산지수 조정률을 구함
  - 이는 원가분석에서의 포괄범위, 자료의 신뢰성 등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 경제 성장수준, 적용인구수 변동과 같이 이해당사자가 쉽게 동의할 수 있고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것임
  - 하지만 어떤 거시경제지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환산지수 조정률이 다르게 산출되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기존 환산지수 산출 연구에서도 지표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를 검토하고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여 최적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 □ 현행 지표 고찰

- 인건비
  - 현행 SGR 모형에서 사용하는 인건비 자료원은 ‘①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보건업 평균 인건비 중 월급여액 확정치 3년 평균, ②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보건업 평균 인건비 월임금총액(정액급여와 초과급여에 전년도 연간특별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값을 합산) 확정치 3년 평균, ③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인건비 자료의 3년 평균 추정치’의 세 가지임
    - 이 중 고용노동부 자료는 의료기관 유형별 인건비가 아닌 보건업 전체의 인건비가 공표되기 때문에 유형별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 또한, 고용노동부 자료는 매년 5월, 통계청 자료는 매년 10월에 공표되기 때문에